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5636(본소), 2014다85643(반소) 판결

[퇴직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5636(본소), 2014다85643(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8943(본소), 2014나8950(반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26 선고 2013가소4929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

피고(반소원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3. 20.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8943(본소), 2014나8950(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